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4.

발 의 자 : 안철수 · 강선영 · 이종욱
김성원 · 김선교 · 김미애
강승규 · 나경원 · 김장겸
주호영 · 안상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·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

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·감독을 받으며 주거이전 신고의무,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·장소의 출입금지,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, 구인, 수용기관의 유치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했으나 관련 사항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은바, 범죄예방 및 원활한 수사활동을 위하여 향후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 등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,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에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의3 및 제38조의2 신설).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3 및 제3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3(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협조)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·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②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·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의2(피해자 등의 보호조치)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성이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호관찰이 개시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6조의3(수사기관과 보호관찰</u> <u>소의 협조) ① 보호관찰소의</u> <u>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</u> <u>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</u> <u>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·감독</u> <u>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</u> <u>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</u> <u>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</u> <u>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</u> <u>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보호</u> <u>관찰 대상자 지도·감독에 활</u> <u>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</u> <u>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</u> <u>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</u> <u>찰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</u> <u>나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</u> <u>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</u> <u>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</u> <u>한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임</u> <u>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</u></p>

<신 설>

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의2(피해자 등의 보호조치)

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성이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.